

제288회 임시회
성 북 구 의 회

의안
번호 제469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기획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이 명 주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 469 호
-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 제 출 일 : 2022. 3. 15.
- 회 부 일 : 2021. 3. 16.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2022.1.13. 시행) 제81조에서 통장을 지방자치 단체의 규칙에 따라 동장이 임명하도록 하여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통 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담고 조례에서 관련조항을 삭제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제4조, 제5조, 제5조의 2 삭제 : 시행규칙으로 제정함으로 삭제
- 나. 제6조(명예반장) : 유명무실한 규정 삭제
- 다. 제7조의 2(비밀유지) : 직무상 알게 된 정보의 사적용도 방지를 위해 신설
- 라. 그 밖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맞춤법 및 띄어쓰기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동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면장·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2022. 2. 3. ~ 2022. 2. 23.)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2022. 1. 13.시행)되어 “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명시”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되었음.

지방행정의 최일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통에 대한 법적 근거와 통장의 임명절차에 대한 규정이 규칙으로 마련되면서 정비되는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됨.